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6일, 남인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출산·입양한 날’로 앞당기고,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앞당기려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경우 각 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과 함께 그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산입 시점을 각각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단기간 내 추가재정소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복무기간 전체’를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인

정하되, 각각의 산입 시점은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